

# 안산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 촉진에관한조례증기정조례(안)

의 안 번 호	825
------------	-----

제출년월일 : '99. 10.  
제 출 자 : 안산 시장

## □ 개정사유

'99. 5. 10. 공포된 안산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 조례에서 환경부의 지침에 따라 100세대이상 신축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음식물쓰레기를 자체 처리할 수 있는 감량화 기기를 설치토록 의무화 하였으나, 기존 설치된 감량화 기기가 악취발생, 전기세 과다, 관리불편 등의 이유로 주민들이 사용을 기피하는등 많은 문제점이 있어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 □ 주요골자

100세대이상 신축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자체 처리할 수 있도록 감량화 기기를 설치토록 되어 있으나, 자체 감량화기기 또는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시장이 설치 운영하는 공공처리시설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담금을 납부하도록 함.(안 제10조제2항 단서 신설)

## □ 개정조례안 : 별첨

## □ 관계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12조, 동법시행령 제6조제2호(별첨)

## □ 관계사업계획서

해당없음.

## □ 예산수반사항

해당없음.

## □ 입법예고사항(또는 사전절차 관련사항)

- '99. 8. 28. ~ '99. 9. 17.(20일간)
- 입법예고결과 : 의견없음

## ~ 안산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안산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자체 감량화기기 또는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시장이 설치 운영하는 공공처리시설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부 록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0조(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 (생 략)</p> <p>②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축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게 하거나 감량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재활용하게 할 때에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자체감량처리하게 할 때에는 감량화 할 수 있는 기기 또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감량된 부산물은 우선적으로 재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p> <p><u>〈신 설〉</u></p> <p>③ (생 략)</p>	<p>제10조(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p> <p>②.....</p> <p>.....</p> <p><u>다만, 자체 감량화기기 또는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시장이 설치 운영하는 공동 처리시설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u></p> <p>③ (현행과 같음)</p>

## 관 계 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12조 (폐기물의 처리기준등)

누구든지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6조 제2호(폐기물의 처리기준)

2. 폐기물은 재활용성·가연성·불연성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할 것. 다만,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분리수집계획 또는 지역적 여건등을 고려하여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구분을 달리할 수 있다.